

특 허 법 원

제 2 4 - 2 부

판 결

사 건 2023나10211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피고, 항소인

1. D

2. E

3.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제 1 심 판 결

J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19가합52743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22.

판 결 선 고

2024. 1.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¹⁾

가. 피고 D, E, 주식회사 F(이하 '피고들'이라 하고, 피고 주식회사 F만을 칭할 때는 '피고 회사'라 한다) 및 제1심 공동피고 G, H(이하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는, ①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생산, 양도, 판매, 대여, 수입 또는 수출 및 이를 위한 청약이나 광고 또는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③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대리점, 매장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제품을 폐기하라.

나. 원고에게,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공동하여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특허권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청구취지 다.항만이 별지3 목록 기재 각 특허권과 관련된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구성되었을 뿐이고, 가, 나. 다.항의 각 청구는 서로 단순병합관계에 불과하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한하여 불복·항소하였고,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불복·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 G", "피고 H"를 "제1심 공동피고 G", "제1심 공동피고 H"로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1) 영업비밀 침해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① 원고가 제조 및 판매하는 '고농도 액상형 의료용 콜라겐'과 관련한 원고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을 불법반출 후 공유한 행위와 ② 위 영업비밀 등을 피고회사 콜라겐 제품 개발과 제조에 부정사용한 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행위로 생산한

콜라겐 관련 제품의 폐기를 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일부 청구로서 10,000,000,000 원의 배상을 구한다.

2)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항소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각 자료의 경제성 및 부정사용 부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자료(갑 제19, 20, 24 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의 콜라겐 제품의 제균·정제 공정은 이 사건 각 자료의 기술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 부정사용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주장

가) 설령, 이 사건 각 자료에 대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영업비밀 보호기간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② 피고 회사의 콜라겐 제품의 제조·판매에 이 사건 각 자료의 기여율 또한 극히 미미하며,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D, E이 원고에게 공탁한 각 50,000,000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영업비밀 침해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면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공개'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따라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비밀유지약정 등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영업비밀의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제3자 보관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무단 반출한 영업비밀의 공개 여부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무단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은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근로자가 비밀유지의무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여 공개한 영업비밀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행위(공개의 상

대방이 됨으로써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역시 부정경쟁방지 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내지 업무상배임에 가공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을 부정 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²⁾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2) 위 판결은, 당해 영업비밀이 관계된 영업활동에 어떻게 이용 또는 활용되었는지가 영업비밀 본래의 용법 및 속성, 관계된 영업활동의 내용, 진행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어느 정도 특징이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나. 영업비밀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 여부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1면 8행부터 12면 10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다만, 11면 8행 첫머리의 "1)"은 삭제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자료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를 퇴사하면서 근무 중 취득 또는 보관하고 있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4, 101, 139, 144 내지 146, 148, 149, 233, 236, 245, 257, 268, 294 기재 각 자료들(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 인정 자료들'이라 한다)을 비밀유지서약서와 정보보완관리규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피고 회사의 컴퓨터 등에 저장해놓고 열람하거나 참고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의 콜라겐 제품 개발·생산 등에 사용하였다.'는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모두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비밀 인정 자료(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된 자료들이다)의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나,³⁾ 그중 이 사건 각 자료⁴⁾는 공지의 기술로 쉽게 습득할 수 있어 경제적 유용성이 낮으므로 영업비

3) 당심 제1회 변론조서 참조.

4) 별지1 목록 기재 각 기술정보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자료를 말한다.

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3, 4, 19, 20, 24, 382, 383호증 및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자료는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기술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콜라겐은 주로 인대, 건, 뼈, 연골 및 피부 조직에 분포하는 생체 결합조직의 주성분으로서, 손상된 연골이나 인체 조직 부위에 주입되어 재건을 도와주는 등 재생의약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콜라겐은 의료용으로 인체에 사용할 경우 면역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콜라겐 구조의 양 말단에 있는 텔로펩티드를 제거하는데, 텔로펩티드가 제거된 상태를 아텔로콜라겐이라 한다. 아텔로콜라겐은 생체조직에 매우 가깝고 생리활성이 큰 고분자물질로 피부조직재생 치료분야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아텔로콜라겐 생산 분야에서는 동물의 조직으로부터 고순도로 분리·정제하여 대량으로 제조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나) 이 사건 각 자료는 고농도 의료용 아텔로콜라겐의 제조공정에 관한 것으로, 그 일련의 공정단계 및 조건이 갑 제19호증('바이오콜라겐_이론수율_MX-JC-CF-006-공정종합-20060215.xls'), 갑 제20호증('공정종합_최종-연구소 수정 1201.xls') 및 갑 제24호증('MX-JC-CF-006-공정종합-수정-20060627.xls')에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아텔로콜라겐의 제조공정은 ① 동물의 피부조직을 분리하고 절편화하는 과정, ② 펩신과 산처리를 통하여 텔로펩티드를 제거하고 콜라겐을 추출하는 과정, ③ 필터를 이용한 여과 혹은 원심분리를 통하여 부유액을 회수하고 불용성 콜라겐을 제거하는 과정, ④ 회수된 부유액에 담긴 콜라겐에 염화나트륨(NaCl)

을 혼합하여 염침전을 일으킴으로써 침전물(콜라겐 덩어리)을 생성하는 과정, ⑤ 망(메쉬)을 이용하여 여과를 하거나 원심분리를 통해 침전물을 회수하는 과정, ⑥ 침전된 콜라겐을 재용해하는 과정, ⑦ 전처리여과 및 제균여과 등을 거쳐 콜라겐을 제균·정제하는 과정, ⑧ 수산화나트륨(NaOH)을 혼합하여 중성화 침전을 유도하는 과정, ⑨ 원심분리를 통해 정제된 콜라겐 침전물을 회수하는 과정의 일련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자료는 위와 같은 제조과정 중, 위 ②의 펩신과 산처리 과정에서 산의 종류를 '인산'으로 하고, 위 ④의 염침전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의 농도를 초기 5몰(Mole)을 적용하고 나중에 0.7몰을 적용하는 등 농도 변화를 주어 처리하고, 위 ⑤의 침전물 회수 과정에서 망(메쉬)을 통하여 거름으로써 침전물을 회수하고, 위 ⑦의 제균·정제 과정에서 백 필터(Bag Filtration), 접선유동화필터(TFF), 0.45 μ m 필터와 같은 3개의 필터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이물질 등을 전처리 여과한 후, 0.22 μ m 필터를 이용하여 미생물을 제균여과하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각 공정단계별로 적정한 농도와 함유량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단계별로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수량, 작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알맞은 온도, 습도, 투입한 성분의 종류·수량, 농도, 작업시간 등이 매우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료를 얻기 위해 수년 동안 상당한 양의 인적·물적 시설과 비용을 투입하였고, 위와 같은 제조기술로 생산한 고농도 의료용 아텔로콜라겐을 주원료로 하여 ① 연골이 손상되었을 때 연골의 주성분인 콜라겐과 혈액의 구성성분인 피브린을 혼합하여 손상된 연골 부위에 도포하는 의료기기인 '카티필'(2009. 7. 27.경 유럽에서 인증을, 2013. 3. 5. 한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음)을, ② 얼굴의 주름을 없애기 위하여 주사기를 통하여 아텔로콜라겐을 피부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성형 필러의 일종인 '테라필'(2006. 12. 30.경 유럽에서 인증을, 2010. 4. 29. 한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음)을, ③ 결손 또는 손상된 인대, 건, 근육, 생체막 등의 연부조직을 치유하기 위해 손상된 조직에 주입·보충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의 재건을 도와주는 의료기기인 '리젠셀'(2009. 11. 9. 유럽에서 인증을, 2013. 6. 13. 한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음)을 각 제조·판매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2013. 2. 4.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한 기술사업계획서(갑 제382호증, 4면)를 보면, 의료용 아텔로콜라겐의 제조기술에 대하여 "A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농축기술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Filler(3% 수준)의 정제기술을 확보한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극소수(3개 사)로 현재는 도입기라고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후발 경쟁업체가 이 사건 각 자료를 입수하면 고농도 의료용 아텔로콜라겐의 제조 시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등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자료의 내용이 이미 공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선행문헌들(을 제4호증의 1 내지 85)은, 이 사건 각 자료와 같은 콜라겐의 제조기술을 기재하면서 (i) 산처리 과정에서 산의 종류로 '인산' 등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산이 사용될 수 있고(을 제1호증의 1 내지 3), (ii) 염침전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의 농도를 초기 5몰(Mole)을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0.7몰을 적용할 수 있으며(을 제4호증의 4 내지 6), (iii) 망(메쉬)을 이용하여 콜라겐 침전물을 회수할 수 있음(을 제4호증의 7 및 8)을 개

5) ① 을 제4호증의 1: 식약처 용역연구사업 연구결과보고서(2007. 11. 2. 제출), ② 을 제4호증의 2: 미국특허번호 US 제4,293,647호(1981. 10. 6. 등록), ③ 을 제4호증의 3: 미국 특허출원공보 US 제2011/0020864 A1호(2011. 1. 27. 공개), ④ 을 제4호증의 4: 미국특허번호 US 제7,118,746 B1호(2006. 10. 10. 등록), ⑤ 을 제4호증의 5: 유럽특허번호 EP 제1,335,735 A1호(2003. 8. 20. 공개), ⑥ 을 제4호증의 6: Macromol. Mater. Eng. 2003, 288, No. 1, ⑦ 을 제4호증의 7: 미국특허번호 US 제7,109,300 B2호(2006. 9. 19. 등록), ⑧ 을 제4호증의 8: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2002-0029859호(2002. 4. 20. 공개).

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자료의 아텔로콜라겐의 제조기술이 개별적으로 선행문헌에 일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고농도 의료용 아텔로콜라겐의 일련의 제조공정은 각 단계별 공정과 조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선행문헌들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쉽게 얻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자료에는 의료용 아텔로콜라겐의 제조공정 단계별 원료와 원료의 종류에 따른 수치 및 여러 조건(부피, 무게, 농도, 산도, 온도, 반응시간 등)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조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주의사항 등도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조공정 전체에 걸친 상세하고 종합적인 내용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므로, 아텔로콜라겐의 제조기술이 개별적으로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자료의 고농도 의료용 아텔로콜라겐의 제조방법이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료를 기초자료로 삼아 아텔로콜라겐을 제조할 수 있다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개발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므로, 설령 그 개별적 기술이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낮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자료가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업비밀 무단 반출 또는 부정취득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가) 피고 D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라.목) 또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비밀유지서약서 내지 원고의 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영업비밀 인정 자료들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영업비밀 인정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피고 회사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E 및 피고 회사에 알리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공개')를 하였는바(그중 일부를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컴퓨터 등에 저장하여 피고 E 등 권한 없는 자가 열람가능한 상태로 둬으로써 최소한 이를 공개하였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한다.

나) 피고 E,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마.목) 또는 업무상배임의 공동불법 행위 여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비밀 인정 자료들은 피고 D이 그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반출되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에 가공한 공동불법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한다.

3) 영업비밀 부정사용행위 인정 여부

가) 부정사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들 중 별지1 목록 순번 4, 101, 139, 144 내지 146, 148, 149, 233, 236, 237, 245, 257, 268, 294 기재 각 자료들은 원고의 기계, 기구에 관한 문서이거나, 원고 제품의 동물실험 자료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각 자료가 피고 회사의 콜라겐 제품 개발·생산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자료가 피고 측 콜라겐 관련 제품 개발·생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주

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위 자료들에 관하여는 영업비밀 부정사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정사용 사실이 인정되는 자료

이 사건 각 자료⁶⁾의 경우 원고의 콜라겐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관한 문서로 콜라겐 추출단계를 기재하고 있어, 피고 회사가 콜라겐 관련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 D이 이 사건 각 자료를 반출한 시점, 이 사건 각 자료가 피고 D이 근무하는 I대학교 교수실 컴퓨터 내지 피고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던 점,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자료에는 원고가 추출된 콜라겐을 응집시키기 위해 5M의 염화나트륨(NaCl)을 투입하고 염화나트륨 최종 농도를 0.7M로 하여 콜라겐 침전이 용이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19, 20호증), 피고 회사도 제조공정에서 5M의 염화나트륨(NaCl)을 첨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염화나트륨 최종 농도를 0.7M로 적용하는 점(갑 제9호증의 1, 2), 별지1 목록 순번 2에는 원고가 용해된 콜라겐 용액이 백 필터(Bag Filtration), 접선유동화필터(TFF), 0.45 μ m 필터와 같은 3개의 필터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이물질 등을 전처리 여과한 후, 0.22 μ m 필터를 이용하여 미생물을 제균여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갑 제20호증), 피고 회사도 제조공정에서 '용해된 콜라겐 용액을 0.5 μ m 노미널 여과필터, 0.2 μ m 노미널 여과필터, 0.1 μ m 노미널 여과필터 순으로 여과하여 불순물을 3단계 전처리 여과한 후, 미생물을 제균여과하는 점(갑 제9호증의 1, 2)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자료는 피고 회사에서 콜라겐 추출방법의 디자인 및 확정에 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시험을 생략하거나 관련 자료 검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등의

6)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자료를 말한다.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콜라겐 제품의 제균·정제 공정은 이 사건 각 자료의 기술정보와 상이하므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9, 11, 12, 15, 19, 20, 24, 26 내지 44, 46호증 및 을 제3, 16, 29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자료를 부정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 D은 2008. 4. 11.경 및 2009. 8. 20.경 원고 사무실에서 '본인이 귀사에 재직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알게 된 아래 열거된 귀사의 영업비밀은 이를 회사에 즉시 반납하고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2009. 8. 31.경 원고를 퇴사하면서 원고에 근무할 당시 취득,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각 자료 등을 위 비밀유지서약서와 정보보완관리규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기 아니한 채 외장 하드디스크, USB 등 전자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 D은 원고를 퇴사한 후 2009. 9. 1.경 J K구 I대학교 세포·조직공학연구소 연구부교수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기술고문을 담당하였다. 피고 D은 I대학교 사무실 및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자료를 각 사무실의 컴퓨터와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해놓고, 수시로 열람, 편집, 수정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콜라겐 제품개발 및 제조에 활용하기 위하여 열람하거나 참고하는 방법으로 각 이용하였다. 또한 피고 D은 피고 회사에서 제품 개발 업무를 담당한 직원(L)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거나 제품 개발 등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제품 개발과 제조를 위한 기술 자문을 해주었고, 피고 D 스스로도 피고 회사에서 연구개발을 하였다고 자인하였다.

(다) 피고 E 및 피고 회사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잘 알고 있는 피고 D을 기술고문으로 고용하였고, 피고 D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각 자료들을 피고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와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은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 E은 위 각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 회사에서 콜라겐 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판매하는 등의 영업 활동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콜라겐 제품의 제균·정제 공정에서 독일 회사의 기성제품(모델명: "Sartopore XLG")을 사용하여 제균·정제를 수행하므로, 이 사건 각 자료의 기술정보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특허의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용해된 콜라겐 용액을 0.5 μ m 노미널 여과필터, 0.2 μ m 노미널 여과필터, 0.1 μ m 노미널 여과필터의 순으로 여과하여 불순물을 제거한다.(S40)", "이후, 상기 산성 콜라겐 용액을 제균 여과하여 저농도 산성 무균 콜라겐 용액으로 만든다."(갑 제9호증의 1의 문단번호 [0061],[0065], 갑 제9호증의 2의 [0058],[0061])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 회사의 제균·정제 공정도 '3단계 필터작업에 의해 이물질 등을 전처리 여과한 후, 미생물을 제균여과한다는 점'에서 앞서 본 이 사건 각 자료의 제균·정제 공정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제균·정제 공정을 그대로 사용하

지 않고, 이를 기초로 피고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일부 접목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료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등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고인 D, E 및 피고 회사가 이를 참조하는 방법으로 고농도 콜라겐 제품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3.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5면 아래에서 4행의 "그런데"부터 16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그런데 원고의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531479호(2015. 6. 26. 공고)의 특허명세서에는 위 (b), (c)를 제외한 (a), (d), (e), (f), (g)와 같은 일련의 기술정보가 모두 개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 (b), (c)는 이미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특 2002-0029859호(2002. 4. 20. 공개), 유럽특허번호 EP 제1,335,735 A1호(2003. 8. 20. 공개), 미국특허번호 US 제7,109,300 B2호(2006. 9. 19. 등록)의 특허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기술정보의 내용이 대부분 공지된 상태에서 선행 특허명세서에 이미 개시된 위 (b), (c)를 부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특허가 등록공고된 시점인 2015. 6. 26.경 이후에는 위 기술정보의 대부분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라.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비밀 인정 자료를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무단 반출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공개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비밀 인정 자료 중 적어도 이 사건 각 자료를 피고 회사의 콜라겐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데에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자료의 무단반출과 공개, 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

(1) 원고는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1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은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자료가 피고 회사의 콜라겐 제품 개발·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 원고 또는 피고 회사의 콜라겐 관련 제품의 한계이익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3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자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 인정 자료를 작성·유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원고의 경쟁회사에 제공할 경우 원고에게 직·간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고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영업비밀 보호기간 내에 콜라겐 관련 제품의 매출이 없었고, 위 기간 이후에도 기술 개발 등으로 인하여 18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자료의 부정취득 및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자료는 고농도 의료용 아텔로콜라겐의 제조공정에 관한 것으로, 그 일련의 공정단계뿐 아니라 각 단계별로 적정한 농도와 함유량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단계별로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수량, 작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 알맞은 온도, 습도, 투입한 성분의 종류·수량, 농도, 작업시간 등이 매우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무단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를 콜라겐 제품의 개발·제조에 사용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최초 제품 생산시점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는 모두 피고들의 이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지 콜라겐 관련 제품의 매출이 없었거나 적자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보

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영업비밀 인정 자료와 관련하여, 그 취득한 영업비밀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본 피고 회사의 2013. 2. 4. 기술사업계획서(갑 제382호증의 제4면)에 의하면, "A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농축기술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Filler(3%수준)의 정제기술을 확보한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극소수(3개사)로 현재는 도입기라고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를 활용할 경우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 피고 회사의 콜라겐 관련 제품 생산금액이 2015년 18,240,000원에서 2016년 180,630,000원, 2017년 419,309,000원, 2018년 783,324,000원, 2019년 1,437,855,000원, 2020년 1,715,083,0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액도 증가하였다. 다만, 표준손익계산서상 피고 회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적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문헌(을 제4호증의 1 내지 8)에 이 사건 각 자료의 개별적인 기술정보가 이미 공지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자료의 일련의 공정단계가 원고의 특허(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531479호, 을 제6호증)에 의해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의 특허가 등록공고된 2015. 6. 26.경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자료의 기술정보의 대부분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인다.

(바) 피고들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영업비밀 보호기간 내에 발생한 사정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및 부정사용 이후의 여러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공탁금의 공제 여부

(1)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D, E이 원고에게 각 5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한편,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650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 E은 2019. 2. 22.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원인사실을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기재하여 각 50,000,000원(합계 10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공탁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D, E의 업무상 배임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들의 위 공탁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고, 7) ② 원고가 아직 위 공탁금을 수

7) 2023. 11. 20.자 준비서면 참조.

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D, E의 회수제한신고로 인해 원고가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피고 D, E은 위 공탁금을 되찾아갈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공탁된 위 공탁금 100,000,000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액 공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발생한 것인데, 피고 D, E이 원고에 대하여 각 5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공탁한 총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200,000,000원[= 손해배상액 총액 300,000,000원 - (일부 변제액 50,000,000원 x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⁸⁾ 원고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8) 제1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G, H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책임은 당심 피고들만이 부담한다.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 원금을 제1심판결(2억 원)보다 많은 3억 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로부터 피고 D, E의 공탁금 합계 1억 원을 공제함으로써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금원은 제1심판결과 같은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판단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바, 이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⁹⁾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0면 아래에서 6행의 "피고 회사"를 "원고"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및 금지·폐기청구, 특허권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이숙연

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기판력의 범위인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판결 주문에 불이익한 변경이 없는 한 판결 이유의 불이익한 변경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영

별지 1

기술정보

1.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의료기기 ‘테라필’, ‘카티필’, ‘리젠셀’ 등에 사용되는 의료용 고순도 아텔로콜라겐(이하 “바이오콜라겐”) 제조에 관한 공정별 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공정별 세부 작업순서 및 방법, 공정별 반응조건 정보가 포함된 다음의 자료

순번	범죄일람표 연번 ¹⁰⁾	증거번호	파일명
1	115	갑19	바이오콜라겐_이론수율_MX-JC-CF-006-공정종합-20060215.xls
2	194	갑20	공정종합_최종-연구소 수정1201.xls
3	193	갑24	MX-JC-CF-006-공정종합-수정-20060627.xls
4-1	201	갑47-1	하도 AGITAOR.dwg.pdf
4-2	201	갑47-2	20050502 CF-PROJECT_EQUIPMENTLIST-1.xls
4-3	201	갑47-3	CF-PRO(기기조건 확인사항).xls
4-4	201	갑47-4	INSTRUMENT_LIST2.xls
4-5	201	갑47-5	LOAD_LIST.xls
4-6	201	갑47-6	material balance-20070502.xls
4-7	201	갑47-7	MX-JC-C-005-CF time table.xls
4-8	201	갑47-8	MX-JC-CF-011-Raw materials.xls
4-9	201	갑47-9	MX-JC-CF-016-Filtration-1.xls
4-10	201	갑47-10	MX-JC-CF-051-CF 도면 Detail 자료.xls
4-11	201	갑47-11	SCHEDULE_R1-1.dwg.pdf
4-12	201	갑47-12	TROUBLE SHOOTING.xls
4-13	201	갑47-13	CF-PRO 주간 업무보고 1019.xls
4-14	201	갑47-14	CF-PRO 주간 업무보고 1026.xls
4-15	201	갑47-15	CF-PRO 주간 업무보고 1101.xls
4-16	201	갑47-16	CF-PRO 주간 업무보고 1109.xls
4-17	201	갑47-17	CF-PRO 주간 업무보고 1130.xls
4-18	201	갑47-18	CF-PRO 주간 업무보고.xls
4-19	201	갑47-19	CF-PRO 주간 업무보고0914.xls
4-20	201	갑47-20	CF-PRO 주간 업무보고0929.xls

4-21	201	갑47-21	CF-S-CURVE 0927.xls
4-22	201	갑47-22	CF-S-CURVE.xls
4-23	201	갑47-23	CF-S-CURVE-1.xls
4-24	201	갑47-24	CF-S-CURVE-1019.xls
4-25	201	갑47-25	CF-S-CURVE-1026.xls
4-26	201	갑47-26	CF-S-CURVE-1101.xls
4-27	201	갑47-27	CF-S-CURVE-1109.xls
4-28	201	갑47-28	CF-S-CURVE-1123.xls
4-29	201	갑47-29	CF-S-CURVE-1130.xls
4-30	201	갑47-30	CF-S-CURVE-1130-RE1.xls
4-31	201	갑47-31	RO SYSTEM.xls
4-32	201	갑47-32	SC_ENG_TBE_A.xls
4-33	201	갑47-33	SC_ENG_TBE_AGITATOR.xls
4-34	201	갑47-34	SC_ENG_TBE_AUTOCLAVE.xls
4-35	201	갑47-35	SC_ENG_TBE_CHILLER.xls
4-36	201	갑47-36	SC_ENG_TBE_PUMP 변경 및 TUBE.xls
4-37	201	갑47-37	SC_ENG_TBE_PUMP(튜브).xls
4-38	201	갑47-38	SC_ENG_TBE_STEAM BOILER.xls
4-39	201	갑47-39	SC_ENG_TBE_냉장고.xls
4-40	201	갑47-40	SC_ENG_TBE_배관.xls
4-41	201	갑47-41	SC_ENG_TBE_실험실용기구.xls
4-42	201	갑47-42	SC_ENG_TBE_원심분리기.xls
4-43	201	갑47-43	TBE_성우제네텍.xls
4-44	201	갑47-44	TBE-F-101.xls
4-45	201	갑47-45	TEB_FILTER류(밀리포어).xls
4-46	201	갑47-46	ARC.dwg.pdf
4-47	201	갑47-47	CF-000-PL-000_변경제외안.dwg.pdf
4-48	201	갑47-48	FORM-a1.dwg.pdf
4-49	201	갑47-49	KEYPLAN.dwg.pdf
4-50	201	갑47-50	CF EQUIPMENT LIST.xls
4-51	201	갑47-51	CF EQUIPMENT LIST-1127.xls
4-52	201	갑47-52	clean room 용 갱의실 가구.xls
4-53	201	갑47-53	MS_SCHEDULE-1(060802) Model (1).pdf
4-54	201	갑47-54	SC_ENG_PROCUREMENT SCHEDULE_A.xls
4-55	201	갑47-55	SC_ENG_Progress Payment report_A.xls
4-56	201	갑47-56	SC_ENG_TBE_세로양식.xls
4-57	201	갑47-57	협력업체 리스트.xls

4-58	201	갑47-58	PR-1-000.dwg.pdf
4-59	201	갑47-59	Block Diagram - CRI_REV4.xls
4-60	201	갑47-60	cf-pro process별정리.xls
4-61	201	갑47-61	raw material specipation.xls
4-62	201	갑47-62	PANEL.dwg.pdf
4-63	201	갑47-63	W.dwg.pdf
4-64	201	갑47-64	TITLE.dwg.pdf

2. 원고의 바이오콜라겐 및 이를 함유하는 의료기기(‘테라필’, ‘카티필’, ‘리젠셀’ 등)의 제조를 위한 공장설계 및 설비구축에 관한 다음의 자료

가. PFD (Process Flow Diagram)

순번	범죄일람표 연번	증거번호	파일명
5	200	갑391	CF-000-PFD-001.dwg.pdf

나. P&ID (Pipe & Instrumentation Diagram)

순번	범죄일람표 연번	증거번호	파일명
6	신규	갑392	PR-1-001~03(R).dwg.pdf

다. 기기도면

순번	범죄일람표 연번	증거번호	파일명
7	신규	갑393	ME-1-001~05.dwg.pdf
8	신규	갑394	ME-1-006~12.dwg.pdf
9	신규	갑395	ME-1-013~17.dwg.pdf
10	신규	갑396	ME-1-018~20.dwg.pdf
11	신규	갑397	ME-1-021~24.dwg.pdf
12	신규	갑398	ME-1-025~32.dwg.pdf
13	신규	갑399	ME-1-033~35.dwg.pdf
14	신규	갑400	ME-1-036~37.dwg.pdf
15	신규	갑401	ME-1-038~40.dwg.pdf
16	신규	갑402	ME-1-041~43.dwg.pdf

10) 피고들이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인 J중앙지방법원 2019노91호 사건의 범죄일람표(3)에서의 연번이고, 동 범죄일람표(3)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신규'라고 기재함.

17	195	갑69	v-101, TG-T190-welding.pdf
18	196	갑70	v-102 ph.pdf
19	197	갑71	v-103-ph.pdf
20	198	갑72	v-104tt.pdf

라. 공장도면

순번	범죄일람표 연번	증거번호	파일명
21	신규	갑403	PR-1-004.dwg.pdf
22	신규	갑404	PR-1-005.dwg.pdf
23	신규	갑405	PR-1-006~07(R).dwg.pdf
24	15	갑76	제조설비 도면 - 카티필, 듀오필, MRM-kit.ppt

마. 준공도

순번	범죄일람표 연번	증거번호	파일명
25	신규	갑406	A-01.dwg.pdf
26	신규	갑407	A-02.dwg.pdf
27	신규	갑408	A-03.dwg.pdf
28	신규	갑409	A-04.dwg.pdf
29	신규	갑410	AF-01.dwg.pdf
30	신규	갑411	AF-02.dwg.pdf
31	신규	갑412	AF-03.dwg.pdf
32	신규	갑413	AF-04.dwg.pdf
33	신규	갑414	AF-05.dwg.pdf
34	신규	갑415	AF-06.dwg.pdf
35	신규	갑416	AF-07.dwg.pdf
36	신규	갑417	C-1.dwg.pdf
37	신규	갑418	C-2.dwg.pdf
38	신규	갑419	C-3.dwg.pdf
39	신규	갑420	C-4.dwg.pdf
40	신규	갑421	C-5.dwg.pdf
41	신규	갑422	DWG LIST.dwg.pdf
42	신규	갑423	F-01.dwg.pdf
43	신규	갑424	F-02.dwg.pdf
44	신규	갑425	F-03.dwg.pdf
45	신규	갑426	F-04.dwg.pdf
46	신규	갑427	F-05.dwg.pdf
47	신규	갑428	H-01.dwg.pdf
48	신규	갑429	H-02.dwg.pdf
49	신규	갑430	H-03.dwg.pdf

50	신규	갑431	H-04.dwg.pdf
51	신규	갑432	H-05.dwg.pdf
52	신규	갑433	H-06.dwg.pdf
53	신규	갑434	H-07.dwg.pdf
54	신규	갑435	H-08.dwg.pdf
55	신규	갑436	H-09.dwg.pdf
56	신규	갑437	H-10.dwg.pdf
57	신규	갑438	H-11.dwg.pdf
58	신규	갑439	H-12.dwg.pdf
59	신규	갑440	H-13.dwg.pdf
60	신규	갑441	H-14.dwg.pdf
61	신규	갑442	H-15.dwg.pdf
62	신규	갑443	H-16.dwg.pdf
63	신규	갑444	H-17.dwg.pdf
64	신규	갑445	H-18.dwg.pdf
65	신규	갑446	H-19.dwg.pdf
66	신규	갑447	H-20.dwg.pdf
67	신규	갑448	H-21.dwg.pdf
68	신규	갑449	H-22.dwg.pdf
69	신규	갑450	H-23.dwg.pdf
70	신규	갑451	H-24.dwg.pdf
71	신규	갑452	H-25.dwg.pdf
72	신규	갑453	H-26.dwg.pdf
73	신규	갑454	P-01.dwg.pdf
74	신규	갑455	P-02.dwg.pdf
75	신규	갑456	P-03.dwg.pdf
76	신규	갑457	P-04.dwg.pdf
77	신규	갑458	P-05.dwg.pdf
78	신규	갑459	P-06.dwg.pdf
79	신규	갑460	P-07.dwg.pdf
80	신규	갑461	P-08.dwg.pdf
81	신규	갑462	P-09.dwg.pdf
82	신규	갑463	P-10.dwg.pdf
83	신규	갑464	P-11.dwg.pdf

3. 원고의 바이오콜라겐 및 이를 함유하는 의료기기(‘테라필’, ‘카티필’, ‘리젠셀’ 등)에 관한 다음의 실험, 분석, 관리 및 제품허가 관련 자료

가. 공정조건 및 제조방법 실험·분석 자료

순번	범죄일람표 연번	증거번호	파일명
84	14	갑49	공정도_노보스트라타.xls
85	신규	갑136	BP-JC-08-069-콜라겐_용해_방법_개선.doc
86	신규	갑137	P-JC-08-090-TheraFill_GA_즉석혼합실험.doc
87	신규	갑138	BP-JC-09-017-Dense_collagen_matrix_제조_결과.doc
88	신규	갑139	BP-JC-09-050-테라폼_실린터_및_말리는_형태_제품_제조_안.doc

나. 제조원가 분석자료

순번	범죄일람표 연번	증거번호	파일명
89	신규	갑140	BP사업부문_제조원가표(Rev.0_090522).xls
90	신규	갑141	바 이 오 콜 라 겐 _ 제 조 원 가 (Rev.00_2008.09.08).xls
91	신규	갑142	카티필 제조원가 - 20090625.xls
92	36	갑143	Raw materials of THERAFILL.xls
93	114	갑144	Collagen Process Concept(성수).xls
94	149	갑145	TheraFill Process Concept(성수).xls

다. 공정별 콜라겐 수율 분석자료

순번	범죄일람표 연번	증거번호	파일명
95	신규	갑146	BioCollagen_공정별수율_분석(HW090608).xls
96	신규	갑147	BioCollagen_공정별수율_분석(HW090609).xls
97	신규	갑148	바이오_콜라겐_생산_수율_DATA_분석_보고서(2009.01.07).doc
98	신규	갑150	콜라겐_공정별_생산_수율_분석_(2008.09.03).doc
99	신규	갑151	콜라겐_공정별_생산_수율_분석_(2008.10.09).doc

라. 콜라겐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자료

순번	범죄일람표 연번	증거번호	파일명
100	160	갑45	QF-705-30(Rev.2_2009.07.22)바이오콜라겐제조기록서.xls
101-1	234	갑48-1	RM-QP-707(자재및제품관리).doc
101-2	234	갑48-2	원료자재시험대장.doc
101-3	234	갑48-3	임상 GMP 준비사항.xls

101-4	234	갑48-4	D080605AAA_유럽향20080716.pdf
101-5	234	갑48-5	Therafill(테라필)_의료기기품질관리기준적합성_평가내용.doc
101-6	234	갑48-6	의료기기_품질관리_기준_심사_관련_지적_사항.doc
101-7	234	갑48-7	의료기기_품질관리_기준_심사_관련_지적_사항-여.doc
101-8	234	갑48-8	_2-1[1]. DSCF1031 충전 실링 시스템.pdf
101-9	234	갑48-9	_2-2[1]. PIC070713충진장치.pdf
101-10	234	갑48-10	TheraFill 생산 일정 20071203.xls
101-11	234	갑48-11	TheraFill_생산계획(장기효능효과,기타실험용).xls
101-12	234	갑48-12	TheraFill_생산계획(장기효능효과,유럽임상).xls
101-13	234	갑48-13	테라필 부자재 20071203.xls
102	신규	갑152	BP-JC-08-081-콜라젠_제품군_생산_체제_(안)_080724.xls
103	신규	갑153	BP-JC-08-081-콜라젠_제품군_생산_체제_(안)_080814.xls
104	신규	갑154	BP-JC-08-081-콜라젠_제품군_생산_체제_(안)_090504.xls
105	16	갑155	SEWON_RM-QM-001 (Eng) Quality Management Manual.doc
106	17	갑156	SEWON_RM-QP-807(Eng)Vigilance system.doc
107	24	갑157	RM-QM-001 (Eng) Quality Management Manual 품질경영매뉴얼-001.doc
108	25	갑158	RM-QM-001 (Eng) Quality Management Manual 품질경영매뉴얼20061206.doc
109	26	갑159	RM-QM-001품질경영매뉴얼.doc
110	101	갑162	QF-705-08 (제조기록서 TF).doc
111	102	갑163	QF-705-13(제조시험기록서 TF).doc
112	103	갑164	QF-705-15 TF 기초시험기록서.doc
113	104	갑165	RM-PR-001(공정절차서).doc
114	106	갑167	08. SGB001 포장표시규격서.doc
115	107	갑168	09. SMD002 제조관리방법서.doc
116	108	갑169	RM-QP-803(시험검사).doc
117	110	갑171	QF-705-30_(Rev.0_2008.07.01)_바이오콜라젠_제조기록서_.xls
118	111	갑172	제조기록서_바이오콜라젠.xls
119	112	갑173	제조기록서_바이오콜라젠_rev._1._20080701(final).xls
120	113	갑174	BP-JC-08-078-바이오콜라젠_제조기록서_(안).doc

121	116	갑175	02. SST002 제조관리기준서.doc
122	117	갑176	MX-JC-07-080-임상 GMP.hwp
123	119	갑177	04. SST004 품질관리기준서.doc
124	122	갑178	11. SMD004 품질관리방법서-@.doc
125	150	갑179	QF-705-08_(Rev.1_2008.07.01)_테라필_제조기록서.xls
126	151	갑180	제조기록서_바이오콜라겐_rev._1._20080701(안).xls
127	152	갑181	제조기록서_테라필_rev._1._20080701(final).xls
128	153	갑182	제조기록서_테라필_rev._1._20080701(안).xls
129	154	갑183	제조기록서_테라필_rev._1._20080701-수정.xls
130	155	갑184	QF-705-08(Rev.2_2008.11.24)테라필제조기록서.xls
131	156	갑185	QF-705-20(Rev.1_2008.10.31)TheraForm-Standard제조기록서.xls
132	157	갑186	QF-705-21(Rev.1_2008.10.31)TheraForm-Sheet제조기록서.xls
133	158	갑187	QF-705-22(Rev.1_2008.10.31)TheraForm-Plug_제조기록서.xls
134	159	갑188	QF-705-23(Rev.1_2008.10.31)TheraForm-Bilayer_제조기록서.xls
135	161	갑189	QF-705-34(Rev.0_2009.04.01)CartiFill제조기록서.xls
136	162	갑190	QF-705-35(Rev.0_2009.04.01)DuoFill제조기록서.xls
137	163	갑191	QF-705-50(Rev.0_2009.05.11)SurgiFill제조기록서.xls
138	237	갑192	제조기록서_바이오콜라겐_rev._1._20080701-수정.xls
139	238	갑193	SC-CF-TF-001(TF 시험방법서).doc
140	253	갑194	RM-QP-402(품질기록관리).doc
141	281	갑195	QF-705-32(Rev.0_2008.11.24)등장및완충용액제조기록서.xls
142	282	갑196	QF-705-33(Rev.0_2008.11.24)리도카인제조기록서.xls
143	284	갑198	RM-QP-705(Rev.2_2009.10.12)공정관리.doc
144	11	갑199	13. SMD007 기기점검방법서-J.doc
145	29	갑200	S-MD-005 청정도측정방법서.doc
146	30	갑201	S-MD-007 기기점검방법서.doc
147	34	갑204	S-GT-001 자재규격서.doc
148	37	갑205	QF-602-05 멸균검증보고서.doc
149	38	갑206	QF-602-06 CIP validation.doc

150	118	갑207	03. SST003 위생관리기준서.doc
151	120	갑208	06. SGM001 원료규격서.doc
152	121	갑209	10. SMD003 위생관리방법서.doc
153	204	갑210	자료05_ 테라필 원자재시험성적서.pdf

마. 제품허가 등을 위한 안전성·효능 실험 및 기술설명 자료

순번	범죄일람표 연번	증거번호	파일명
154	1	갑212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테라필 의료기기 기술문서등-(안전성 유효성 형식))20071112.fdz
155	2	갑213	TherForm sponge 세포독성시험 의뢰_연구계획서_20080304.doc
156	3	갑214	골절 유발 NZW rabbit(10mm 이내)을 이용한 ASTEM-B™의 효능시험-070517.ppt
157	5	갑215	제품의성능및안정을확인하기위한시험규격및그설정근거와실측치에관한자료.hwp
158	6	갑216	안정성에관한자료.hwp
159	7	갑217	Therafill_임상_사진_(스페인)_(090723).pdf
160	8	갑218	CRI-08-P0004-TheraForm_sponge_세포독성시험.pdf
161	9	갑219	CRI-08-R0004_TheraForm_Sponge_세포독성시험-080321.pdf
162	10	갑220	시험보고서 - Bone Fill 전 임상_Y09-REPORT-003_최종.pdf
163	18	갑221	1. Therafill_Section5_Clinical data(1121).doc
164	19	갑222	THF_Section8 Attachment8.1.doc
165	20	갑223	THF_Section8. Attachment 8.2.xls
166	22	갑224	THF_TCF 변경 전후 Comparative table.doc
167	32	갑225	14-1. 시험기초기록서.doc
168	39	갑226	TheraFill - Cytotoxicity study_V0015_110.pdf
169	40	갑227	TheraFill - Genotoxicity Bacterial_V0023_211.pdf
170	41	갑228	TheraFill - Genotoxicity Chromosomal_V0002_130.pdf
171	42	갑229	THF_Section1 Product introduction & classification.doc
172	43	갑230	THF_Section10 Sterilization.doc
173	44	갑231	THF_Section10.1 Sterilization - Attachment 10.1.pdf
174	46	갑232	THF_Section12 Summary.doc
175	48	갑233	THF_Section2 Essential requirement

			checklist.doc
176	49	갑234	THF_Section3 Risk management1.doc
177	50	갑235	THF_Section4 Product specification and drawing.doc
178	51	갑236	THF_Section4. Product Spec _ Attach..pdf
179	52	갑237	THF_Section5 Clinical data.doc
180	53	갑238	THF_section5. Annex1_Preclinical test.doc
181	57	갑239	THF_Section7 Bio-compatibility Tests.doc
182	58	갑240	THF_Section8 Certi & Eval report.doc
183	59	갑241	TheraFill-Intracutaneous_TI251_804.pdf
184	60	갑242	TheraFill-ISO implantation study_TI1250_812.pdf
185	61	갑243	TheraFill-ISO maximization sensitization_TI261_306.pdf
186	62	갑244	TheraFill-LAL_V0027_300.pdf
187	63	갑245	TheraFill-Pyrogen study_TU010_807.pdf
188	64	갑246	TheraFill-Systemic subcu_T0118_904.pdf
189	65	갑247	TheraFill-Systemic toxicity_TU012_504.pdf
190	66	갑248	THF_Section9 Manufacturing.doc
191	67	갑249	THM_Section1_Product_introduction_&_classification.doc
192	68	갑250	THM_Section10_Sterilization.doc
193	72	갑251	THM_Section12_Summary.doc
194	74	갑252	THM_Section2_Essential_requirement_checklist.doc
195	75	갑253	THM_Section3_Risk_management.doc
196	76	갑254	THM_Section4_Product_specification_and_drawing.doc
197	77	갑255	THM_Section5_Clinical_Data.doc
198	78	갑256	THM_Section5_Clinical_Data_Annex1_1.doc
199	79	갑257	THM_Section5_Clinical_Data_Annex1_2.ppt
200	80	갑258	THM_Section6_Label_&_instruction_for_use.doc
201	82	갑259	THM_Section8_Certi_&_Eval_report.doc
202	83	갑260	THM_Section8_Certi_&_Eval_report_Attachment_1.doc
203	84	갑261	THM_Section8_Certi_&_Eval_report_Attachment_2.pdf
204	85	갑262	THM_Section8_Certi_&_Eval_report_Attachment_3.pdf
205	86	갑263	THM_Section9_Manufacturing.doc
206	87	갑264	THF_Section7 Attachment 7[1]테라필 독성자료.doc
207	95	갑271	THF_Section8 Stability testing - Attachment 1.doc
208	96	갑272	THF_Section8 Stability testing -

			English.doc
209	97	갑273	THERAFORM protocol - CE.pdf
210	98	갑274	Section9_Manufacturing - THERAFILL.doc
211	123	갑275	THERAFILL-#1. Introduction & classification.doc
212	124	갑276	THERAFILL-#11. Summary.doc
213	125	갑277	THERAFILL-#2. Requirement checklist.doc
214	126	갑278	THERAFILL-#3. Risk management1.doc
215	127	갑279	THERAFILL-#3. Risk management2.doc
216	128	갑280	THERAFILL-#4. Product spec & drawing.doc
217	130	갑281	THERAFILL-#6. Clinical data1.doc
218	132	갑283	THERAFILL-#7. Biocompatibility.doc
219	133	갑284	THERAFILL-#9. Manufacturing.doc
220	134	갑285	붙임1-나-3. 기원동물 관련 근거 자료.pdf
221	135	갑286	붙임1-나-4.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pdf
222	136	갑287	붙임1-라-1. NAMSA 독성 자료.pdf
223	137	갑288	붙임1-사-2. 동물시험 이식용량 근거자료.pdf
224	138	갑289	붙임1-아-1. 물리화학적 시험규격.pdf
225	139	갑290	붙임1-아-2. 멸균에 관한 시험 자료.pdf
226	140	갑291	붙임1-아-3. 주사용기 및 주사침 시험규격 관련 자료.pdf
227	141	갑292	붙임2-마-1. TheraFill 과 KOKEN 제품 특성 비교.pdf
228	142	갑293	붙임1-라-2. 전신독성과 이식시험 기간설정 관련 근거.pdf
229	143	갑294	붙임1-사-1. 테라필 전임상 결과서.pdf
230	144	갑295	붙임2-나. 테라필 안정성 시험 분석 자료.pdf
231	146	갑296	01TRF-Final_report090306.doc
232	147	갑297	테라필 임상 결과 _ 영어 번역 _Synopsis(TRANSLATED)rev1.doc
233	148	갑298	CRL-EX-08-009_TheraFill_을_이용한_장기간_효능효과_시험.pdf
234	164	갑299	1 정상 시험결과보고서.pdf
235-1	165	갑300-1	A GMP 제조업허가증.pdf
235-2	165	갑300-2	의약품실적보고 2007년 .pdf
236-1	167	갑302-1	Annex8.1-Stability test of TheraFill(Room-1year).pdf
236-2	167	갑302-2	Annex8.3.1-Shelf life_CCM.pdf
236-3	167	갑302-3	Annex8.3-Stability testing protocol for CartiFillTM.pdf
237	168	갑303	CartiFill_TheraFill predicate

			device(7-10-09-SK)_4.doc
238	169	갑304	CAF_Section9 Manufacturing & QC procedures.doc
239	170	갑305	CAF_Section2 Essential requirement checklist..doc
240	171	갑306	CAF_Section3_Risk management.doc
241	172	갑307	CAF_Section4 Product specification and drawing.doc
242	173	갑308	CAF_Section5 Clinical data.doc
243	175	갑309	CAF_Section7 Bio-compatibility Tests.doc
244	176	갑310	CAF_Section8 Certi & Eval report.doc
245	177	갑311	시험의뢰서(무릎관절연골결손유발 NZW_Rabbit을_이용한_테라필피브리글루복합제품의_전임상효능효과.pdf
246	178	갑312	13_week_systemic_toxicity.pdf
247	179	갑313	TheraForm_ASTM_Hemolysis_-_TheraForm.pdf
248	180	갑314	TheraForm_Cytotoxicity_Study_Using_the_ISO_Elution_Method (1X_MEM_Extract).pdf
249	181	갑315	TheraForm_Genotoxicity_Mous_Lymphoma_Assay.pdf
250	182	갑316	TheraForm_Genotoxicity-Reverse Bacterial Mutation Study_08t2997402.pdf
251	183	갑317	TheraForm_ISO subcutaneous implantation study - 9 weeks.pdf
252	184	갑318	TheraForm_ISO_Intracutaneous_Study_-_Extract.pdf
253	185	갑319	TheraForm_ISO_Systemic_Toxicity_Study_-_1_Extract.pdf
254	186	갑320	TheraForm_Mouse_Peripheral_Blood_micro nucleus.pdf
255	187	갑321	TheraForm_Mouse_Peripheral_Blood_micro nucleus_EtO_ Sterilization_Condition.pdf
256	188	갑322	TheraForm_NAMSA_ISO_Closed_Patch_Sensitization_Study.pdf
257	191	갑324	[동물 시험] 시험 보고서 -TheraForm-bone_TForm[1].pdf
258	192	갑325	Therapy Master File 종합.doc
259	202	갑326	Summary of Biomcompatibility Study - TheraFill.doc
260	203	갑327	Summary of Preclinic Efficacy Study - TheraFill.doc
261	206	갑329	자료07_돼지 바이러스 불활성화 관련 문서.pdf
262	225	갑335	물리화학적특성에관한자료.hwp
263	226	갑336	생물학적안전에관한자료.hwp

264	227	갑337	성능에관한자료.hwp
265	228	갑338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의뢰서(TheraFill).flz
266	231	갑339	[동물시험]시험보고서-Theraform_standard(최종).pdf
267	232	갑340	[동물시험]시험보고서-Theraform_bilayer(최종).pdf
268	233	갑341	[동물시험]시험보고서-Therafill-bone_TFill[1].pdf
269-1	235	갑342-1	Cartifill_Mixing_Procedure_1__ver.2.ppt
269-2	235	갑342-2	Cartifill_Mixing_Procedure_2__ver.2.ppt
269-3	235	갑342-3	CE_CartiFill_insert_paper_ver.2.0_.doc
269-4	235	갑342-4	CAR_Section 5_Annex5.1.pdf
269-5	235	갑342-5	CAR_Section 5_Annex5.2.pdf
269-6	235	갑342-6	CAF-Section 8 Certi & Eval report_Annex 8.2 Certification of raw material.pdf
269-7	235	갑342-7	CAF-Section 8 Certi & Eval report_Annex8.1Stability testing protocol for CartiFillTM.pdf
269-8	235	갑342-8	CAF-Section 10 Report and Certificate for Sterilization_ Annex 10.1 Validation Report and Certificate for Sterilization.pdf
269-9	235	갑342-9	CAF-Section4 Product specification and drawing_Annex 4.1Certification of raw material.pdf
269-10	235	갑342-10	CAF_Section6 label & instruction for use.doc
269-11	235	갑342-11	CAF_Section11 Vigilance system.doc
269-12	235	갑342-12	CAF_Section12 Summary.doc
269-13	235	갑342-13	CAF_Section13_DoC.doc
269-14	235	갑342-14	CAF_SectionA1_Master_Index.doc
269-15	235	갑342-15	CAF_SectionA2_Company introduction.doc
269-16	235	갑342-16	CAF_TCF_Cover.doc
269-17	235	갑342-17	CE-representative's Power of Attorney.pdf
270	259	갑345	RM-QP-807(Vigilance system).doc
271	277	갑355	붙임1-나-1. 테라필 원자재 COA , MSDS 모음.pdf

272	285	갑356	2 pH 시험결과보고서.pdf
273	286	갑357	3 강열잔분 시험결과보고서.pdf
274	287	갑358	4 콜라겐함량 시험결과보고서.pdf
275	288	갑359	5 리도카인함량 시험결과보고서.pdf
276	289	갑360	6 중금속 시험결과보고서.pdf
277	290	갑361	7 Collagenase Trypsin Resistance.pdf
278	291	갑362	8 주입능시험 보고서.pdf
279	293	갑364	무균 시험결과보고서.pdf
280	294	갑365	[1]테라필vs코켄 임상시험 요약.pdf
281	295	갑366	TheraFill_주사용기_시험규격(수정).doc
282	297	갑368	CAF_Section1 Product introduction & classification.doc
283	298	갑369	CAF_Section10 Report and Certificate for Sterilization.doc
284	300	갑370	DuoFill_Sec.1 Product introduction & classification(Rev.00).doc
285	301	갑371	DuoFill_Sec.10_Report_and_Certificate_for_Sterilization(Rev.00).doc
286	302	갑372	DuoFill_Sec.2 Essential requirement checklist(Rev.00)..doc
287	303	갑373	D u o F i l l _ S e c . 3 _ R i s k management(Rev.00).doc
288	304	갑374	DuoFill_Sec.4 Product specification and drawing(Rev.00)..doc
289	305	갑375	DuoFill_Sec.5_Clinical data((Rev.00).doc
290	307	갑376	DuoFill_Sec.8_Certi_&_Eval_report(Ver.00).doc
291	308	갑377	DuoFill_Sec.9_Manufacturing_Process(Ver.00).doc
292	309	갑378	N A M S A _ 자 료 _ 요약본 _ 및 _ 독 성 결 과_Report.pdf
293	310	갑379	TheraForm_USP_Pyrogen_Study_-_Matrial_Mediated.pdf
294	311	갑380	TheraForm-bone_SP_시험계획서.pdf

피고 제품

번호	제 품	허가번호	허가일
1	콜트릭스(ColTrix) 콜라겐 ¹	N/A	N/A
2	콜트릭스 카티리젠 (ColTrix CartiRegen)	제허14-631호(수출용)	2014. 3. 13.
		제허15-264호(국내용)	2015. 2. 26.
3	콜트릭스 텐도리젠 (ColTrix TendoRegen)	제허15-264호(국내용)	2015. 2. 26.
4	콜트릭스 더마리젠 (ColTrix DermaRegen)	제허15-201호(수출용)	2015. 2. 12.

¹ ‘콜트릭스 콜라겐’은 순번 2 내지 4번 제품의 원료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허가번호나 허가일이 없습니다.

별지 3

.끝.